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48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5.

발 의 자 : 한정애 · 박용갑 · 이학영
임오경 · 윤후덕 · 서영석
이개호 · 박지원 · 허영
진성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동물학대에 대한 형사처벌과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,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.

그러나 동물학대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물 소유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반복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물 소유권 제한을 의무적으로 선고하도록 하며, 소유권 제한 기간 중 동물을 취득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2, 제43조제1호 및 제97조제1항제3호 신설).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동물에 대한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) ① 법원은 제10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서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.

② 법원은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제한을 선고할 때에는 죄질, 재범의 위험성,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

③ 법원은 제10조를 위반하여 2회 이상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제한을 명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제한을 선고받은 자는 해당 기간 동안 동물을 소유할 수 없다.

제43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

제97조제1항제3호를 제3호의2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소유권이 제한되는 기간 동안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0조의2(동물에 대한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) ① 법원은 제 10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 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서 검 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동물에 대 한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법원은 동물에 대한 소유권 의 제한을 선고할 때에는 죄질, 재범의 위험성,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법원은 제10조를 위반하여 2회 이상 벌금 이상의 형을 선 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 서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제한 을 명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제한을 선고받은 자는 해당 기간 동안</u></p>

제43조(동물의 소유권 취득) 시·도 및 시·군·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<신 설>

- 1. (생 략)
- 2. ~ 4. (생 략)

제97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·2. (생 략)

<신 설>

- 3. (생 략)
- 4. (생 략)
- ② ~ ⑥ (생 략)

동물을 소유할 수 없다.

제43조(동물의 소유권 취득) -----

-----.

1.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

- 1의2. (현행 제1호와 같음)
- 2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97조(벌칙) ① 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3.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소유권이 제한되는 기간 동안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

- 3의2. (현행 제3호와 같음)
- 4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⑥ (현행과 같음)